

## 경운대학교 대학생활지원센터운영규정

#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경운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대학생활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능)** 센터는 재학생의 능동적인 대학생활 동기부여, 자기개발 및 학생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정주형 대학생활 교육지원 체계를 KW-RC, We-Me Campus로 구축하여 사회산업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전인적 인재양성을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을 총괄한다.

### 제2장 조직 및 업무

**제3조(센터장)**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, 센터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학생활 지원업무를 주관하며,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중임할 수 있다.

**제4조(조직)** ① 센터에는 전문위원, 연구원, 특별연구원, 보조연구원, 연구교수, 전임연구원, 조교 및 계약직원 등을 둘 수 있다.

② 계약직원은 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행정능력을 갖춘 자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용하며, 1년 단위로 임용한다.

**제5조(업무)**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

1. 대학생활 지원 프로그램 개발·운영
2. 대학생활 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사전조사 및 성과분석
3. 대학생활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 관리
4. 재학생 정주여건 관련 실태 및 수요조사
5. 기타 대학생활 지원과 관련된 업무

**제6조(운영)** ① 센터는 대학생활지원 프로그램을 운영을 총괄하는 주관부서가 된다.

② 사회변화와 수요를 반영한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대학생활지원 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③ 전년도 프로그램 운영 성과분석 및 개선안 도출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연간 차년도 대학생활지원 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④ 모든 사업에 대하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며, 사업 종료 후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개선

및 우수사례를 관리한다.

⑤ 비교과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생활지원위원회를 두고, 위원회의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
### 제3장 운영위원회

**제7조(위원회 목적)** 센터의 업무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**제8조(위원회 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1. 센터 운영의 기본 계획 및 결과
2. 운영규정의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3. 재학생 정주여건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
4.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·장비의 활용에 관한 세부사항 심의
5. 기타 필요한 사업

**제9조(위원회 구성 및 임기)** ①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, 운영위원은 센터장을 포함한 7인 내·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

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중임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센터의 직원 중 1인을 위원장이 임명한다.

**제10조(회의운영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
### 제4장 기타

**제11조(기타규정)**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하여 세부사항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규정류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**제12조(준용)**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관련 제규정을 준용한다.

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